



## I. 의의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3의 규정에 의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본래적 납세의무와 부가적 납세의무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조세협력의무로서 각종의 신고,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세를 납기경과 후에 납부하는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고지된 경우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를 강제하기 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납부의무를 이행강제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가산세와는 달리 「가산금」이라 함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과세관청에서 부과고지한 세목(예 : 재산세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가산세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구 분	가산세	가산금
법적 성격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	연체이자적 성격
법적 근거	개별세목에 규정	기본법 규정에 근거
징수방법	당해 세목으로 징수	고지세액에 가산 징수

## II. 가산세의 법적성격

### 1. 조세법상 협력의무 이행 강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適期)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고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세액공제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세금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각종 가산세제도가 있는데 현행 조세법에서는 가산세제도가 일반적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취득세의 가산세는 후자에 속한다.

### 2. 성실신고납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제재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위에서 본 납세자의 협력의무의 하나인 성실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 제121조의 가산세는 이러한 성실신고납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02. 11. 13, 2001두1918 등 다수). 취득세의 가산세는 성질상 행정적 제재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형식은 조세로 되어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는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산세가 조세의 한 종목으로서 과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조 제1항 제13의 2호에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와 같은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과처분에 의한 본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금과 달리 취득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의 체계상으로는 조세의 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 III. 가산세의 유형

#### 1. 개요

지방세의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이행의무가 분리됨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가산율은 각 세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체이자적 성격이므로 지연일수에 1일 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1일 10,0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

## 2.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적용

### (1) 대상세목 : 9개 세목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특별징수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2) 적용

신고와 납부가 분리되는 세목에 대한 가산세적용은 2004.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예를 들면 2003.12.30.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2004.1.4.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록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규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여야 하므로 미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고 창구담당공무원이 대리작성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위임장을 작성 · 제출하도록 하되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향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증빙하는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담당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시 접수증과 납부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사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판단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과세하도록 취소결정한 경우 변경 납세의무자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

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판98두3532, 1999.12.28 참조) 지방세법상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록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납세의무자의 법령 부지 또는 오인 등으로 인한 납부지연이므로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027, 2010. 7. 15)

### 【사례】 등록세 중과세 가산세 적용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정확한 지적이 없어서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0두5944, 2002.04.12. 선고)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의한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소 신고납부금액에 대한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335, 2009. 1. 23)

### (3) 비과세 · 감면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취득세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지만 과세금지에 해당되어 과세관청에서 부과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권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과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감면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면신고(신청)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나 신고불성

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의 적극설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의거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세액이 감면되어 없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서는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비과세 또는 전액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판례|| 신고와 정당한 사유판단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92누2936, 2943, 1992.10.23.; 대법원 94누3582, 1995.4.28. 등 참조).

따라서 부칙의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이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02두66, 2002.8.23.)

### ||판례||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의 부과요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95누92, 1995.11.7.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고철의 매입이 매입세액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둘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의 소극설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의거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세액이 감면되어 없는 경우 신고(신청)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면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신청)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98두16705, 1999.9.17.)

### ||판례|| 감면신청과 면제요건 판단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4다31419, 1995.2.28. 참조), 개인소견으로 입법적 보완 없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비록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르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대상에 해당되나,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권행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음. 그러나 감면의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대법원 2001두10639, 2003.6.27.)

#### (4) 미신고 후 납부시 가산세 적용문제

첫째,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만을 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각 세목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의 원인이 각각 상이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연일자에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한 때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과소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인가?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신고행위는 존재하되 보완할 수가 있는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면 과소신고를 한 이상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신고행위는 정당하되 보완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언제든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나 신고납부기한 내에는 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판례|| 과소신고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공제액을 과다계상한 나머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2두12526, 2003.3.28.)

### 【사례】 신고후 미납부시 가산세 적용 판단(중요)

구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98두16705판결, 99.9.17) 납세의무자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방세 비과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경감한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그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음(행안부 지방세운영-88, 2011. 1. 9)

### (5)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

야 하며, 신고 ·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 · 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는 세무서장 · 세관장 및 시장 ·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세인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본세가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소극설은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또는 무납부가산세의 일종)만 10%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양 견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가 있다는 것은 본세의 부가세이기 때문이고 농어촌특별세법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 제11조에서는 세무서장 · 세관장 및 시장 ·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 【사례】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부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한 감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고지한다는 규정이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므로 비록 처분청담당 공무원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교환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교환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법함. (행자부 심사 2002-54, 2002.1.28.)

### **[지침]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요령(행자부 세정-1653, 2004. 6. 18)**

#### **관련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①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산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와 신고 · 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지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가 당해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한다.

##### ○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 중가산금 적용 체납액 : 50만원이상

○ 지방세법 제27조제1항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 중가산금 적용 체납액 : 30만원이상

□ 적용요령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이기 때문에 본세를 확정할 때 동시에 확정됨

-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 징수할 경우 『당해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 · 징수 방법도 본세의 부과징수방법에 의함

○ 지방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당해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적용범위는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상의 적용 규정이므로

-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기준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은 아래와 같이 부과 · 징수함

- 가산금 적용율 : 3%(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
- 중가산금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 참조)

※ 재경부에서 종전의 국세 가산금 등 적용기준(지방세 기준 → 국세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함(조세정책과-737, 2004.6.14 유권해석 참조)

□ 시행일기 : 본 요령은 시행일부터 적용



## 증전의 유권해석 사례

- ① “구 교육세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비록 국세의 증가산금 적용 체납액으로 30만원이나 지방세의 증가산금 적용 체납액은 10만원인 경우 본 세인 지방세 체납액(10만원)를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인 경우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국세청 징수46101-248, 1994.1.10)
- ② 소액부징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없으므로 본 세인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본 세가 2,000원 이상이면 농어촌특별세가 2,000원 이하라도 부과·징수함 (행자부 세정13407-01-1136, 1998.12.17 참조).

## 【사례】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 적용기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조세정책과-737, 2004. 6. 14)

## [지침] 신고와 납부의무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요령(행자부 세정-83, 2004.1.9.)(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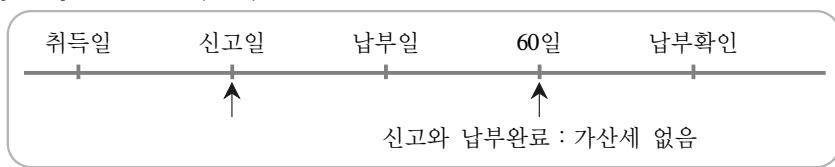
## I. 근거규정

세목별	신고·납부	가산세	관련서식
취득세	•지법 §20	•지법 §21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48호의 3 •납부서 : 별지 제48호의 4 (자동차 : 별지 제48호의 15)
등록면허세	•지법 §30	•법 §32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53호의 4 (현 제48호의 3) •납부서 : 별지 제53호 (제53호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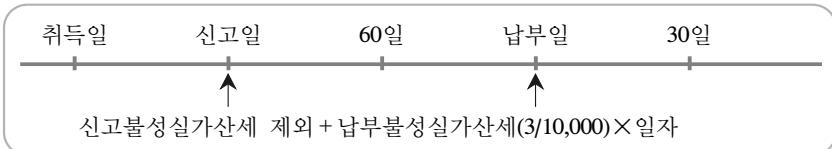
레저세	•지법 §45	•지법 §45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0×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56호 •납부서 : 별지 제49호
담배 소비세	•지법 §60	•지법 §61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0×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94호의 3 (제94호), 별지 제94호의 4 •납부서 : 별지 제49호
주민세 재산분	•지법 §83	•지법 §83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0×지연일자	•신고서 : 조례로 정함. •납부서 : 조례로 정함.
지방 소득세	•지법 §91	•지법 §91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0×지연일자	•신고서 : 법인세분 별지 제71호의 2 •납부서 –법인세분 : 별지 제71호의 3 –소득세분 : 별지 제71호의 4(별지 제49호)
자동차세 주행분	•지법 §137	•지법 §137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0×지연일자	•신고서 : 별지 제77호의 3 •납부서 : 별지 제77호의 4
지역 자원시설세	•지법 §147	•지법 §147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0×지연일자	•신고서 : 조례로 정함. •납부서 : 조례로 정함.
지방 교육세	•지법 §152	•지법 §153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0×지연일자	

## II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

[사례1] 신고기한 내(60일)에 신고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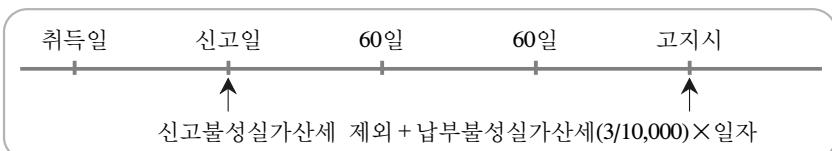


[사례2] 신고기한 내(60일)에 신고하고, 납부기한 후 30일 내 납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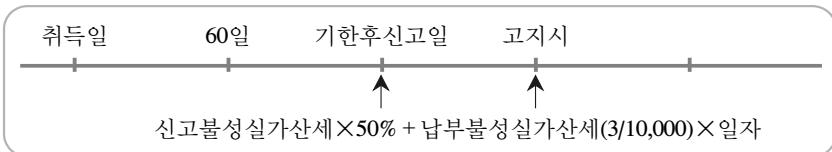
-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취득세납부서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부받아 갔다고 하더라도 금고은행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따라서 신고기한 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납부기한(예 : 15일 정도) 내에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함(취득세납부서를 재교부하여서는 안 됨).  
— 왜냐하면 직권고지를 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지속적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납부고지서 교부시점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당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증가산금을 징수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더 이상 과세하지 아니함.

[사례3] 신고기한 내(60일)에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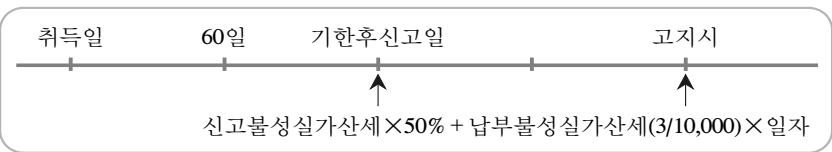
- 이 경우에도 [사례2]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

[사례4] 신고기한 내(60일)에 미신고하였으나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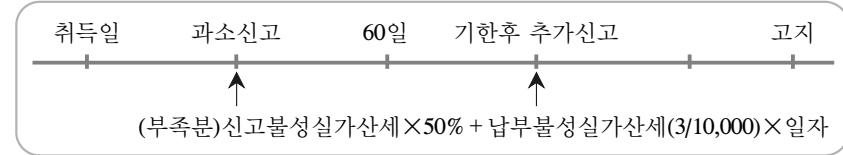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산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경과일을 기준으로 가산율(1일 10,000분의 3)에 자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함.
- 이 경우에도 납부서를 교부할 것이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납부토록 하고 그 이상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발생을 방지함.

[사례5] 신고기한 내(60일)에 미신고하였으나 기한후신고를 하고 고지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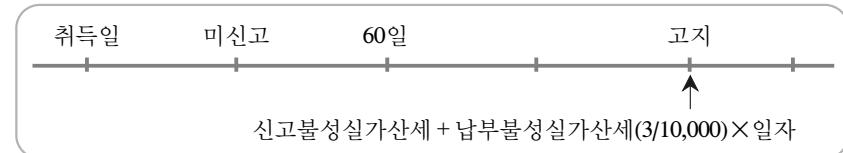
- 이 경우에는 [사례4]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

## [사례6] 신고기한 내(60일)에 과소신고, 기한후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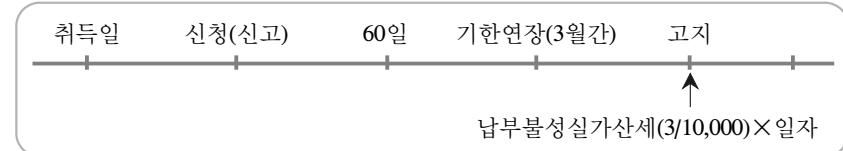
- 부족된 신고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50%를 감산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경과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자에 가산율(1일 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
- 납부서를 교부할 것이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납부토록 하여야 함.

## [사례7] 신고기한 및 기한후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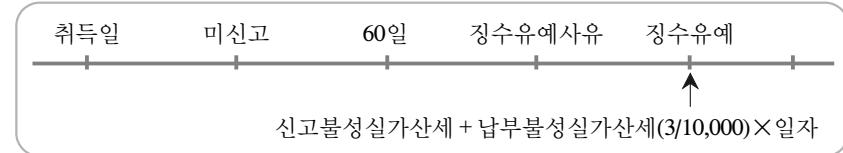
- 신고납부기한 및 기한후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가산하여 납세고지서로 고지하여야 함.

## [사례8] 신고납부기한 내에 천재지변 등 사유로 기한의 연장조치를 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연장된 기한까지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 여부를 판단하고, 납 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기한경과일(60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기 한이 경과되는 날(3월)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납세고지서 교부(발송)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함.

## [사례9]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징수유예사 유가 발생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징수유예신청일(그 통지서 발부일) 전까지 기산하여야 함.
- 이는 징수유예의 효력은 기산금과 중기산금부과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권자가 부 과고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납세자에게 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함.

**[적용례]**

-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120일 경과 후 부과고지시 가산세액의 산정방법

$$[100\text{만원} \times 20\%] + [100\text{만원} \times (3/10,000 \times 120\text{일})] = 20\text{만원} + 3.6\text{만원} = 23.6\text{만원}$$

$$\text{총납부세액} : 100\text{만원} + 23.6\text{만원} = 123.6\text{만원}$$

-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20일 경과 후 고지 전 기한후신고시 가산세액의 산정방법

$$[100\text{만원} \times 10\%] + [100\text{만원} \times (3/10,000 \times 20\text{일})] = 10\text{만원} + 0.6\text{만원} = 10.6\text{만원}$$

$$\text{총납부세액} : 100\text{만원} + 10.6\text{만원} = 110.6\text{만원}$$

### 3.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 (1)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sup>1)</sup>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 (2) 증가산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인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니한다.

이 경우 재산세 부과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고지되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3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총 가산금의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3퍼센트)+증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IV. 가산세면제

### 1. 가산세의 부과

#### 가. 가산세의 범위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할 지방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 납부한 경우에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적인 세금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납부의무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과고지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되지 아니한다.

#### 나.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등기를 하고 이전하여야 할 경우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중가산세율 100분의 80 까지 적용한다. 따라서 각 신고납부 세목별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가산적용율에 차이가 있다.

###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기 신고하여 확정한 세액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하는 경우에 미납 부세액이나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을 곱하여 과세하는 가산세를 말하는 것이다<sup>2)</sup>.

## 2. 가산세의 감면 등

### 가. 가산세 감면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2) [사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과-3027, 2010. 7. 15)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과세하도록 취소결정한 경우 변경 납세의무자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판98두3532, '99.12.28 참조) 지방세법상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록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납세의무자의 법령 부지 또는 오인 등으로 인한 납부지연이므로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사유와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및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8호의 3 서식]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별지 제8호의 4 서식]하여야 한다.

### 【사례】 신용카드사의 미승인시 가산세 적용 판단

지방세법 제179조의3제3항에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한, 동법 제26조의5제2항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하고 있는바, “B” 법인이 “A” 카드사에 인터넷 카드납부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FAX를 발송하였으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인 “A” 카드사 지방세 납부 승인이 없었다면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7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지방세수납대행기관(A카드사)가 신용카드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780, 2010. 7. 1)

### ||판례|| 법인해산 등 청산절차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판단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특히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별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91누9848, 1992.4.28.)

### ||판례|| 지방세의 가산세 부과요건

1. 고의, 과실,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대법원 93누20467, 1994.8.26.).
2.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함(대법원 93누15939, 1993.11.23.).
3. 행정별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함(대법원 91누5341, 1991.11.26.).

지방세를 감면한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종전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신고납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취득세 등의 규정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과세 또는 감면 이후 추징사유를 규정한 경우라도 신고납부기한이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부과는 곤란한 것이다. 그리고 추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부과가 역시 곤란하다.

#### 나. 감면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수정신고에 한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50%로, 6월경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20%로 가산세를 감면 적용하며, 1년경과 2년이내에는 10%로 가산세의 감면범위가 점차 축소 적용한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 ·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 다. 감면 절차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가산세감면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4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V.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적용

#### 1. 적용 기준

2007년부터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규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삭제되었다. 즉 종전에는 농어촌특별세법상에는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법상의 가산세 규정이 삭제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지방세분 농어촌 특별세의 가산세의 적용은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세인 지방세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고 국세의 세목인 이상 지방세의 부가세라고 하더라도 지방세의 가산세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일부 이견은 지방세분 부가세는 본세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국세의 실체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논리가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규정은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되고 지방세의 가산세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적용 방법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운영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관련 가산세가 구분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에도 신고관련가산세와 납부관련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가. 농어촌특별세분 무신고 가산세

### 1)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지방세분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text{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20\%$$

### 2) 전부부당 무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징수한다.

$$\text{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전부부당무신고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40\%$$

이 경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3) 일부부당 무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 나. 농어촌특별세분 과소신고가산세

#### 1)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신고는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text{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10\%$$

#### 2) 전부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세로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부당한 방법은 상기의 전부부당 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과 같다.

$$\text{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전부부당과소신고가산세} = \text{지방세 감면세액} \times 40\%$$

#### 3) 일부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중 일부분이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전부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지방세 감면세액 × 10%

#### 다. 농어촌특별세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지방세초과환급세액 × 10%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 라. 농어촌특별세분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어촌특별세분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납세자가 환급받은 농어촌특별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어촌특별세분 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의 산출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초과하여 환급 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 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